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19호

문화체육관광부

프로스포츠 선수 권익 강화 '표준계약서' 도입

정세영 문화일보 기자

스포츠이슈톡

기울어진 운동장, 무엇을 더해야 하나

주재현 ESPOUSE EARTH, 체육시민연대 변호사

이동훈의 100°C

체육지도자, 운동선수라면 꼭 봐야할 광고

이동훈 아주경제 기자

김창금의 무회전 킷

지방체육회 독립시대, 스포츠 거버넌스 어떻게 이룰 것인가?

김창금 한겨레 선임기자

『직장운동부』

“스포츠선진국, 공정하고 행복한 직장운동부를 위하여”
“성남시, 전국 첫 ‘직장운동부 인권보호관’ 운영”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00

프로스포츠 권익 강화 '표준계약서' 도입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종목별 연맹, 구단, 선수 대상 간담회와 공개토론회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그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프로스포츠계 불공정한 계약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종목별 5개 선수계약서로 이뤄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수, 구단의 의무를 제시하고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 용품, 부상, 질병,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분쟁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대한 표준안을 정했다.

또한 연맹별 규약에서 정한 웨이버(계약기간 중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등 선수 신분이 변동되는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초상, 이름, 음성 등 인격적인 요소가 만들어낸 재산적 가치를 제3자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다.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 기존 계약서는 선수의 의무 조항은 자세한 반면,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돼 있었다. 아울러 기존 계약서상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인정 범위나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했다.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은 계약기간 동안 선수 활동에 한정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1년간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 자료 보관(아카이빙) 목적인 경우에만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수는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 의사에 관계 없이 선수 교환(트레이드)을 진행했으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 일방에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이 이뤄질 수 없도록 했다. 교환 계약 이후에는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임의탈퇴와 관련해 본래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적 어감을 주는 용어를 '임의해지'로 변경했다. 임의해지 선수가 되면 원 구단이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임의해지 선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했다(다만, 3년의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 해외, 실업 기간 불산입). 또한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임의해지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웨이버, 임의해지 등 선수 신분 관련 중요한 사항이 기존에는 규약, 규정에만 언급되며,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가 알기 쉽도록 선수 신분 관련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도록 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도 규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종목별 연맹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관계자들의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보조금 성과 평가 항목에 '공정 환경 조성 노력'을 추가해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은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바람직한 계약서와 계약문화에 대해 정립해나가는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의 원칙 아래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프로스포츠계의 공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기울어진 운동장, 무엇을 더해야 하나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는 도입되었지만

연일 'ESG'가 화두이다.

'ESG'란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자로, 기후 위기를 맞아 정부 정책이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친환경, 사회적 책임, 조직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신호인 것이다. 산업화 세대(배고픔)와 민주화 세대(인권)를 거쳐 그레타 툰베리를 위시한 '지구 세대(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구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지구사학자 이병한 교수의 표현)'의 등장으로 한창 분주한 요즘, 과연 스포츠계에서는 어떠한 노력과 변화가 진행 중일까? 지구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배고픔과 인권'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스포츠계는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아직도 선수(지도자)의 생계 보장, 처우 개선과 같은 이슈들로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글 · 주재현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가 드디어 도입되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생계위협·인권유린으로부터 막아줄 방패는 최근 정부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다. 지자체에서 행정편의적으로 마련한 한 두 장짜리 근로계약서에는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여전히 계약서 없이 근로를 제공하거나 계약서를 직장운동경기부가 보관하는 경우 또는 지자체 대신 감독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계약과 관련된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국회는 2020년 8월 18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을 신설했다. 2020년 12월 22일 개최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안) 공개토론회 등을 비롯한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21년 4월 5일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다음 장 계속

그러나 이 정도 표준계약서로는 여전히 미흡하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는 검토 결과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① 1년 단위 계약이 현실이며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 계약직 전환도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 기간 설정 권한을 사실상 직장운동경기부에 위임하고, 대회 참가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체결한 계약을 무력화시키는 규정(제3조)
- ② 주 3일 근무 도입까지 논의되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여 주 6일제 근무를 명시한 규정(제5조)
- ③ 연장(새벽 6시 출근)·야간(저녁 훈련)·휴일(대회 출전) 근로가 일상인 현실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제5조 제6항)
- ④ 계약 종료 후에도 이전 팀에서 이적 동의서를 받아 오게 하는 현실에서 '보스만 룰(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이적에 관한 교섭을 할 수 있다는 1995년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외면한 채 계약 기간 중 이적에 관한 논의조차 금지하는 규정(제8조 제6항)
- 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소속팀이 일방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제14조)
- ⑥ 선수가 선수 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선수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불가항력으로 포섭하여 이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제19조)
- ⑦ 오히려 코로나19 같은 법정 감염병 기타 천재지변을 불가항력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불가항력 등에 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기록이나 성적이 없음을 이유로 선수의 동의 없이 계약을 종료하거나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의 부재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제6조의 자구 수정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은 애교(愛嬌)에 불과하다. 똑같은 이유로, 2021년 5월 4일 프로축구선수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마련한 '프로축구 선수 표준계약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어렵게 마련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의 대폭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부분의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된다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점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그 설치와 운영이 법정 의무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인 직장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세금으로 편성받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한다. 지자체나 체육회의 재량이 0으로 수렴해야 하고 앞으로 개정돼 적용될 표준계약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선수 친화적'이어야 하는 이유다.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오산시체육회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를 적극 검토하여 내년 계약에 반영할 것이라 한다. 부산시체육회에서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검토에 한 청년 변호사가 '영웅'처럼 발 벗고 나섰다. 서울시에서도 섯별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ESG in Sports'를 당부하며, 하루 빨리 스포츠 분야에서도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로부터 축복받는 지구 세대가 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글을 쓴 **주재현**은 변호사로 회사법과 환경법을 전공했으며, 스포츠가 좋아 체육시민연대와 KUSF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환경(E)과 스포츠(SPO)를 통해(USE) 지구(EARTH)를 지지한다(ESPOUSE)는 의제로 'ESPOUSE EARTH'라는 스포츠 교육·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ESG in Sports'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체육지도자, 운동선수라면 꼭 봐야할 광고

뉴스가 끝나고, 텔레비전에는 체벌 받는 아이의 모습이 나왔다. 한 성인 남성이 버럭 소리를 지른다. "운동한다는 애들이 뭐 하는 거야?" 팔을 부들부들 떨던 아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한 스포츠 용품 회사의 광고다. 사기업이 공익을 위한 광고를 텔레비전을 통해 내보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에서 진즉에 내보내야 했을 광고가 이제서야 전파를 탔다.

이 광고에는 쇼트트랙 선수인 심석희(24)가 등장한다. 그는 코치였던 조재범(40)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 조재범은 1심에서 10년 6개월 형을 받았다. 그리고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주장으로 항소 중이다.

심석희 사건 이후 지난해 6월에는 고(故) 최숙현 사건이 터졌다.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에 스포츠 선수 출신 초선 의원(이용)이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세상이 떠들썩한지 1년이 지났다.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난해 8월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처리가 미흡하다'는 질타를 받으며 이사장이 교체됐다. '윤리 배턴'이 이숙진에서 이은정으로 넘어갔지만,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산더미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가해자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산다.

강원체중·고 양궁부 사건만 해도 그렇다. 중학생이 다수의 고등학생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설립과 함께 신고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신 집행부와 황희 장관이 이끄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뜻뜻미지근한 반응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뜨거워지다가도 금세 식으며 미지근해진다.

갈 곳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한숨 돌렸다'고 오해했을 가해자들에게 그리고 스포츠, 스포츠 인권 등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에게 이 광고는 경종을 울린다.

이 광고는 스포츠인권연구소의 자문과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스포츠인권연구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면서 목표와 한계를 설정하고 쏟아붓는 것이 스포츠의 도덕이라 보기 어렵다. 스포츠 선수들이 책임과 자유를 토대로 자율적 행위와 의사결정을 하며 존엄하게, 즐겁게 스포츠 하는 미래를 그려본다"고 말했다.

김명희 나이키코리아 대표이사는 "다음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선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고에 참여한 심석희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향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누군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과거의 굴레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다.

체육 지도자, 운동선수라면 이 광고를 꼭 보길 바란다. 거울과 같이 당신을 비추고 있다.

관계 기관(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에게는 광고에 나온 질문을 그대로 해볼까 한다. "달라지긴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 걸까?"

지방체육회 독립시대, 스포츠 거버넌스 어떻게 이룰 것인가?

거버넌스(governance), 요즘 많이 쓰이는 말이다. 하지만 쉽게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일단 거버넌스는 정부라는 뜻의 거버먼트(government)와 다르다. 정부는 국가 통치기구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고전적 형태의 통치나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정부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민간의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기업조차도 주주, 경영자, 종업원,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시대다. 국가는 '공공성'을 독점할 수 없고, 또 시장은 공공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원화된 사회에 다양한 주체가 형성하는 네트워크가 워낙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관료주의는 민간 영역에 비해 한계가 있다. 스포츠에서도 거버넌스는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거버넌스의 구체적 형태로 볼 수 있다. 학계, 체육계, 인권 전문가 등이 혁신위원회에 참가했고, 이들의 개혁 권고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기관이 이행을 보증하는 형태로 정책화됐다.

하지만 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대한체육회가 빠진 것은, 여전히 발언권이 큰 정부와 거버넌스의 다른 참여 주체들 사이의 소통과 신뢰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때도 대한체육회는 국외자로 소외된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에 대한 체육계의 피해의식이나 불신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다.

스포츠 거버넌스는 더 큰 과제에 맞닥뜨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거버넌스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차지했던 지방체육회의 회장직은 지난해부터 선거를 통한 민간 체육회장 시대로 들어갔다. 이어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올해 6월9일부터는 지방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바뀐다.

과거에 지자체의 예산으로 '편하게' 운영돼왔던 지방체육회는 이제 독자적인 생존의 길에 몰렸다. 뼈를 깎는다는 각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혁신 조직으로 거듭나는 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이 험난한 과정에서 경기도가 거버넌스의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경기도는 5월 도와 도의회, 지방체육회가 참여하는 '경기도 체육혁신협의체'라는 3자 회의를 구성했다.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체육회 조직 재설계, 체육시설 운영 개선 방안, 도 체육 업무의 체육회 이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용역 발주를 통해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국 스포츠는 전환기다. 사회 변화에 따라 체육 제도나 행정도 과거의 국위선양이나 승부 지상주의 등 국가체육의 이념에서 탈피해 '스포츠 포 올'로 바뀌고 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적 권력 분점이라 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필수가 되고 있다. 물론 해방 이후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국가주의 스포츠 문화 탓에 거버넌스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이해 당사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해 정책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토론장은 거의 없었다. 정부나 정치권이 방향을 설정하면 모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정부와 체육단체 사이의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은 형성될 수 없었다.

정부의 권력 독점이 아니라 민간 영역과의 협력통치가 스포츠에서의 거버넌스다. 정부의 개방적 자세와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스포츠 개혁을 위한 거버넌스는 정부에서부터 종목 단체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수직적 권력 질서의 창조적 파괴를 요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MK 스포츠 2021.06.02
박찬형 기자

직장운동부 선수 인권보호 규정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함께 1일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규정 마련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과 선수인권 보호를 위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화(「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 2021년 6월9일 시행)됨에 따라 문체부는 선수, 지도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지침을 마련*했다.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주요 내용: ▲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요건 명시, ▲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선수 인권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지도자가 소통하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 설치, ▲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행위자, 가담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운영규정 지침은 지도자, 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 시 준수해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9일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지도자 간 불평등한 계약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데 이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단체가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성적 지상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성과평가 체계 개선안도 마련한다. 지도자, 선수 설문조사* 결과 현재 성과평가 시 대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 77.5%, 75.8%로 나타났다.

* (조사 기간) 2020년 11월~12월, (참여 인원) 지도자 103명, 선수 466명

이에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 성과평가 시 대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60%로 낮추며, ▲ 팀 기여도, 훈련 참여도, 소통 능력 등 정성지표를 40%까지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과평가체계(안)를 제시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성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훈련, 체벌 등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유병채 체육국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에 이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지침과 성과평가 체계 개선 방안 마련으로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인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표준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평가체계 개선내용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단체에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선수 인권보호를 더욱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chanyu2@maekyung.com]

성남시, 전국 첫 '직장운동부 인권보호관' 운영

경기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직장운동부 인권보호관'을 채용해 인권침해 상담실 운영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초대 직장운동부 인권보호관은 범죄심리학을 전공한 김현정(50)씨로 서강대학교 성평등센터 상담교수,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등을 지냈다.

김 인권보호관은 성남시 직장운동부 숙소가 있는 성남종합운동장(중원구 성남동) 스포츠센터 상담실에서 근무한다.

상담을 원하는 선수와 1대1 심층 면담을 하고 심리상태와 스트레스, 우울, 불안 정도를 진단하게 된다.

상담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며,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인권보호관은 또 인권침해 예방·보호 정책 개발 업무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직장운동부 인권보호관을 채용하게 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직장운동부는 육상, 하키, 펜싱, 빙상, 볼링, 태권도, 테니스, 배드민턴, 복싱, 장애인탁구 등 10개 종목에 106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주간 스포츠 소식

전북체육회, 전문체육 지도자 간담회 개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2_0001462384&cID=10808&pID=10800

[단독] 故 최숙현 유족 1인 시위... "부산조정협회 만행 고발"

<http://www.spotv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424215>

"스포츠선진국, 공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직장운동부를 위하여!" [공개토론회 지상중계]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106040100029220001581&servicedate=20210603>

스포츠 경기장, 집단감염 '0'... 정부 "관중수용 규모 협의할 것"

<https://www.news1.kr/articles/?4330201>

프로스포츠협회, 선수·지도자·심판 심리상담 지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7_0001467072&cID=10501&pID=10500

"스포츠, 정치적 이용 말라"... 뽀뽀한 '적반하장'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25498_34936.html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 저금리 융자 올해 마지막 접수

<http://mksports.co.kr/view/2021/546271/>

생활체육 메카된 진천 종합스포츠타운... 등록회원 6천600명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3070500064?input=1195m>

신한금융그룹, 4년간 댄스스포츠연맹 후원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1_0001460877&cID=10501&pID=1050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